

2023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23. 11. 2(목) ~ 11. 15(수), <14일간>
- ※ 제321회 정례회 기간 : 2023. 11. 1.(수) ~ 12. 22.(금), <52일간>

3. 감사 중점사항

가. 재난안전관리실(안전총괄관) 및 산하 도로사업소(6)

(1) 재난안전관리실(안전총괄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건설분야 주요계획 수립,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부지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지하도상가 관리 및 지하도 상가 정책에 관한 사항
- 도로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에 관한 사항

- 도로포장에 대한 연구·기술 지원 및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유지관리 계획 총괄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등

(2) 도로사업소(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시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의 보수 및 도로굴착 관련 포장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 제설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일반시도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의 도로부대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
- 교통신호기·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 및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나. 소방재난본부

- 소방행정,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유지,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다. 물순환안전국 및 산하 물재생센터(2)

(1) 물순환안전국

- 수변감성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 물순환 정책, 수질 보전, 토양오염 방지,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지하수·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 풍수해 대책, 하천·유수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조정 to 관한 사항
-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중량 및 난지물재생센터

- 하수 처리 공법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오니처리시설(탈수시설 포함)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분뇨·정화조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오니케익 재활용 및 부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등

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교량·치수시설·하수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축·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등

마. 기술심사담당관 및 산하 사업소

(1) 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심의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설비·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에 관한 사항 등
- 기술개발 계획수립·조사·연구와 기술직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 공사 품질관리·안전관리 지도계획의 수립·점검에 관한 사항

(2) 품질시험소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시험기준 선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시험에 관한 사항
- 계량기 검정 및 검사, 택시미터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등

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처리시설(하수, 슬러지, 분뇨, 차집관로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재이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물산업클러스터 관련 시설 중 공단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된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내 기타 부대시설(체육시설, 주차장, 사택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송 도 호	·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의사지원팀장 고은미
부위원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김 용 호 박 철 성	· 전문위원 박남권 · 입법조사관 심현보 · 입법조사관 권혁일 · 입법조사관 정민선 · 입법조사관 김성연 · 입법조사관 남기태 · 행정6급 홍민아 · 행정7급 김시환 · 행정7급 백제리 · 관리운영7급 공혜정
위 원	국민의힘 " " " " " " 더불어민주당	김 길 영 김 춘 곤 김 형 재 남 창 진 박 성 연 이 상 욱 한 신	※ 속기요원(2명) 음향 및 녹취요원(1명)

II . 감사 수감기관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소관부서)
11월 2일(목) 10 : 00	재난안전관리실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총괄과 ○ 재난안전정책과 ○ 재난상황관리과 ○ 재난안전예방과 ○ 중대재해예방과 ○ 건설혁신과 ○ 도로계획과 ○ 도로관리과 ○ 도로시설과 ○ 교량안전과 ○ 도로사업소(6개)
11월 3일(금) 09 : 30	재난안전관리실	▶ 현장확인감사	
11월 6일(월) 10 : 00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감성도시과 ○ 치수안전과 ○ 물재생계획과 ○ 물재생시설과 ○ 물재생센터(2개)
11월 7일(화) 09 : 30	물순환안전국	▶ 현장확인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기술본부 ○ 물재생운영본부
11월 8일(수) 10 : 00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부 ○ 토목부 ○ 건축부 ○ 설비부 ○ 방재시설부
11월 9일(목) 09 : 30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현장확인감사	
11월 10일(금) 10 : 00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행정과 ○ 재난대응과 ○ 예방과 ○ 안전지원과 ○ 현장대응단 ○ 소방감사담당관 ○ 서울종합방재센터 ○ 소방학교 ○ 119 특수구조단 ○ 소방서(25개)
11월 13일(월) 10 : 00	소방재난본부	▶ 현장확인감사	
11월 14일(화) 10 : 00	기술심사담당관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심사담당관 ○ 품질시험소
11월 15일(수)	감사결과 정리	-	-

III . 지적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합 계	261	178	27	56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사업소 포함)	79	57	6	16
소방재난본부	45	34	0	11
물순환안전국	47	25	10	12
물재생센터	10	8	2	0
도시기반시설 본부 (시설국)	56	41	2	13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포함)	24	13	7	4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178건

[재난안전관리실] — 57건

1. 겨울철 대비 열선,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장치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 할 것
2. 과속방지턱의 품질확보 및 시공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고품질의 과속방지턱으로 정비할 것.
3.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지에스건설)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현대산업개발)에 따른 업체 행정처분 시 사고후 대응·복구과정을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것.
4.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바, 지진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것.
5. 송파안전체험관 민간위탁과 관련해 동일한 업체가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운영비의 80프로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공정성, 투명성, 창의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쟁모집 방안을 마련할 것.
6. 수해예방 및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투수블록 성능회복 장비를 확충하고 청소물량을 확대할 것.
7.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점검하는 중대재해감시단은 안전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안전분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8. 올림픽대교 남단과 북단, 송파지하차도의 충돌완충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바, 안전한 차량 통행을 위해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할 것.
9. 올림픽대교 남단 교대, 북단램프 등 피복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탈락되어 내부 철근의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바, 신속히 보수할 것.
10. 올림픽대교 남단 신축이음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통행하는 차량에 충격이 발생하는바, 조속히 보수할 것.
11. 올림픽대교 북단 하부 조류방지망에 거더 콘크리트가 노후로 인해 떨어져 매달려 있는데, 차량과 오토바이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할 것.
12. 올림픽대교 주변 잡풀 및 잡목방치로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시설물점검이 불가능한 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13. 올림픽대교 위 경관조명 파손과 보행로 전선관 미정비, 연결통로 볼트 돌출 등으로 보행자 통행 안전에 불편을 주고 있는바, 신속히 보수할 것.
14. 세월이 발생한 성내5교 하류측 교각을 점검 보완할 것.
15. 방음터널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바,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신속히 방음터널 화재안전성을 제고할 것.
16.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이태원참사 원인분석이 시민들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져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

닌지 의구심이 드는바, 사고원인 분석과 안전계획 수립 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임할 것.

17. 평창터널 계획 수립 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최적의 안을 마련할 것.
18. 고령의 시민들을 포함한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시민 안전보험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19. 방재등급 연장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터널 특성에 맞도록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재시설을 설치할 것.
20.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이전에 준공한 터널에 대해서도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을 설치할 것.
21.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용역업체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장기 지연되었던 바, 입찰 전 업체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공사지연이 발생하는 업체의 경우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도록 할 것.
22. 태릉~구리IC간 확장사업이 2009년부터 2026년으로 계획되어있었으나 올해 하반기 착공예정인바,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
23. 서울시도 내 가로수에 가려진 가로등을 실태 파악할 것.
24.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내 세부 가지치기 기준을 개정하여 규정을 마련할 것.

25. 한강교량에서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지망 설치방안을 마련할 것.
26. 과거 침수이력이 있는 지하차도 중 배수펌프가 설치되지 않은 11곳에 대하여 배수펌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
27. 지하차도의 진입차단시설 설치 시 하천변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하차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8. 방음터널이 소음이나 먼지의 저감효과가 뛰어나나 화재위험성이 높고 설치비가 방음벽보다 2배 넘게 소요되는바, 방음터널보다는 저소음포장 등 다양한 소음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방음벽 설치를 우선할 것.
29. '포장도로 긴급복구공사(연간단가)'와 관련하여 일부 도로사업소는 의회 예산 심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조기발주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할 것.
30. 긴급출동용역반의 작업일지 내 사진대지가 빠져있는 등 작성이 미흡한 바, 시정조치할 것.
31. 긴급출동용역반은 야간에 발생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3일 전 주간에 발생한 민원을 몰아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면밀히 조사하여 시정조치할 것.
32.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바 터널 내 화재대비 안전시설 보강 방안을 마련할 것.

33. 터널 내 은색 스테인리스 소화전은 차량 통행으로 발생된 먼지 등으로 인해 눈에 띄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없는 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할 것.
34.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비롯한 도로관리 시스템들을 통합하면서 유지관리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를 검토할 것.
35. 건설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층 고용개선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건설 현장으로의 청년층 유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36. 코로나19 방역물품 비축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방역물품 비축 창고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37. 6개 도로사업소의 차량 운행일지 양식 및 작성방법을 표준화하여 통일시킬 것.
38. 보도블럭 교체 기준을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곳에 작업될 수 있도록 할 것.
39. 열선이나 염수분사장치 등을 설치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곳을 고려할 것.
40.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이나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겨울철 화재 발생시 초동 대처를 위한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확충하고 작동점검을 철저히 할 것.
41. 지반침하 발생 이력을 원스톱으로 철저히 관리할 것.

42. 향후 지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서울시
에 도입하여 대처할 것.
43. 지진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진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확충하고 시민들이 쉽게 확인 가능한지 수시 점
검할 것.
44. 고가차도와 같은 도로시설물 하부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
로 인하 2차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바, 점용시설의 화재 위
험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용시설을 허가할 것.
45.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 이후 대형차 끼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대형차 출입제한 및 끼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6.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대형차 끼임사고 발생으로 통행료를 지불
하고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차량들이 정체를 겪거나 피해
를 보고 있는 바, 교통정체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보상제도
를 마련할 것.
47.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작업 중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바, 작업보호차량 추가임차 등 작업 중 안
전사고 대비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48. 재난안전통신망 훈련과 관련하여 응답률이 저조한 기관들이
있는바, 참여를 독려하여 훈련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

49. 성산대교 안전성과 관련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를 철저히 완료할 것.
50. 서소문고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소문고가 개축을 신속히 추진할 것.
5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구두질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 적용범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것. ([붙임]연번1 참조)
52.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청사건립에 400억원이 투자되어 준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사 건립 당시 철저한 타당성조사를 거쳤는지 등을 살펴보고 향후 청사 재건립 시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53. 공공시설 건립 시 지역특성 및 용도를 고려한 건설이 필요하나 시흥 청사 건립 시 계획 수립이 경솔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재건립 시 이를 유념할 것.
54. 남부도로사업소 시흥 청사와 같은 대규모 공사 시, 주민 의견 청취가 필요하므로 향후 재건립 시 주민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할 것.
55.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청담대교 남단과 학동로 연결 과제는 사업성이 1이 넘어 추진 가능한 과제였고 일부 건설이 진행되어 비용까지 투입되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상태임. 중단사유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청함. ([붙임]연번2 참조)

56.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서울 시내 슬라포 지붕 관련하여 시민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조치, 교체나 수리 시 걸리는 기간, 설치 및 관리, 점검 방법, 공무원들이나 시행 업체의 현장확인 및 점검 방법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함. ([붙임]연번3 참조)
57.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인파 운집 방지 등 시민 안전 예산으로 배정되었음에도 안전 강화와 직결되지도 않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 낭비에 가까운 마포구 홍대 입구역 근처 레드로드의 문제점(해당구역 사업필요성, 레드아스콘 재질 사용이유, 대체사업 등)에 대해 파악해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함. ([붙임]연번4 참조)

[소방재난본부] — 34 건

1. 현재 소방에서는 특수방화복 전용세탁기가 설치된 일부 소방관서를 제외하고는 일반세탁기를 이용하고 있음. 특수방화복을 일반세탁기로 세척 시 화재현장 등에서 발생한 각종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소방대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특수방화복 관리를 위해 모든 소방관서에 전용세탁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그 외 개인장비의 세척·관리 현황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
2. 최근 3년간 반려동물로 인한 인덕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함. 이에 강서소방서에서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안전덜개 사업을 구체화하여 서울시 전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보면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화재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 지원 등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
4. 매년 투입되는 소방예산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화재 및 구조, 구급 출동 건수는 감소하지 않아 투입 예산 대비 그 효과성에 의구심이 드는 만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

5. '17년 「소방법」이 개정되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제 처분을 현장대원이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음에도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로 적극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강제 처분시 현장대원들의 부담감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출동 지연을 방지하는 첨단기술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
6. 서울은 타 지자체보다 구급대의 1일 평균출동 건수(약 10건, '23.9 기준)가 높게 나타나고 비응급 출동도 빈번하게 발생해 이로 인한 대원들의 피로도 누적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구급대원 처우개선을 위한 구급차 증설과 구급대원 편성인원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7. 소방서 119종합상황실 및 본부 통합영상관제시스템 개선사업과 관련해 12월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보고 할 것.
8. 실화재 훈련장 설치 사업의 경우 해외의 우수한 시설들을 벤치마킹하여 동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례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
9. 소방활동 외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은 심리적·육체적으로 그 피로도가 상당한 만큼, 심신 단련과 피로회복 등 재충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방대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10. 한강 교량 자살사고 예방 CCTV가 미설치된 교량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일괄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

11. 현재 운영 중인 수난구조대(4개소) 중 여의도 수난구조대는 타 수난구조대보다 관할지역이 넓어 일부 구간의 경우 황금시간 내 도착이 어려운 상황으로 수난구조대 추가 신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립방안을 마련하고 조직편제, 비용 지원 등을 소방청에게 적극 건의할 것.
12.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소방재난본부에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의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에 적극 임할 것.
13. ‘화재증거물 감정센터’는 우수한 실적을 갖고 있음에도 운영조직 등의 행정적인 문제로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으로의 지정이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소방재난본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력 증원 및 조직 편성 등을 추진하여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받도록 할 것.
14. 전통시장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고 시장 내부에 설치된 소화기도 충분하지 않아 신속한 화재 대응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시장 내부의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고 소화기 추가 설치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
15. 정부에서 발표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자율소방대 조례 개정 등 15개)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통시장 화재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

16. 119항공대 격납고의 노후화 및 협소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 시 격납고 부지확보 및 공사 추진사항 등을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후 격납고 신축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17.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력 재배치 연구용역’에 다양한 현실적 요인(거주 및 유동 인구 등)을 반영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본 연구를 토대로 소방청 등의 관계기관에 서울소방서비스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 할 것.
18.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도입(강남과 마포 일부구간)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도시교통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동 시스템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9. 근무 중 부상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체력검정 평가 시 이를 고려하지 않아 소방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바, 소방대원들이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20. 무선영상시스템 및 통신장비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 구호·구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21. 고가 소방장비 중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가 있어 자칫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을 받아 조속히 교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을 진행 할 것.

22. 일선 소방서마다 과(부서) 명칭이 통일되지 못해 혼란스럽다는 민원이나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바 명칭 통일 등 조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3. 공동주택의 소방 및 피난시설 관리가 미흡하여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소방 및 피난 시설의 철저한 소방 점검과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예방활동에 적극 임할 것.
24. 이태원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중밀집 축제 행사 시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소방재난본부의 역할 및 인원 배치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
25. 현행법상 소방에서 해체공사장의 화재안전권한이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조례개정을 진행하고 있음. 본 개정안 통과 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해체공사장 화재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
26. 119항공대가 운영중인 헬기의 경우 첨단장비 미비로 인해 야간비행 및 야간산불 대응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장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훈련을 통해 헬기 조종인력의 과실을 최소화할 것.
27. 서울시내에 설치된 옥외소화전을 보면, 일부가 기준보다 낮게 설치되거나 화단 등에 가려져서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바, 서울시 전역의 설치한 옥외소화전 관리현황을 파

악하고 기준에 맞도록 재정비 할 것.

28. 소화전 관련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 일부에서 산출 기초조사서 기재 미흡, 견적서와 비교견적서의 산출수량이 맞지 않는 등 부실한 행정처리가 발생하고 있는바,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계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9.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인근 시설물로 확대되어 자칫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산불위험지역 인근 시설에 대한 화재대책을 마련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비 관리와 훈련에 철저를 기할 것.
30.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구급대원의 성추행 범죄가 발생하여 서울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할 것.
31. 소방관용차량의 사용내역을 보면 입력내용이 부실하거나 결제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결제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 따라서, 소방재난본부는 관용차량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실 관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32. 소방헬기 1호기 교체 사업은 300억(국비 150억, 시비 1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계약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종 및 업체 선정에 해야 할 것이며, 원활한 부품조달을 위해 국산 부품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
33.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장비인 전용관창의 경우 '24년도 구매수량 및 기존보유 장비의 수량이 119개소의 소방관서에 배

치하기에는 10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족수량을 추가 구매하여 모든 소방관서에 배치하도록 할 것.

34. 전기버스 화재는 일반적인 전기자동차 진압장비로 진압할수 없어 만일의 화재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전기버스 화재진압장비를 구비하고 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관서에서 전기버스 대응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

[물순환안전국] — 25건

1. 노후 주유소의 토양정밀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곳이 있으므로 이행 지연 사유와 추가조치 계획에 대해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추적조사 등을 시행할 것.
2. 물재생센터 내 노후 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내구연한 초과 장비가 다수 보유된 것으로 파악되는바,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합리적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교체토록 할 것.
3. 수변감성도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사업 간의 내용이 특색 없이 획일적이므로 개별 하천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4. 도림천은 현재 도보와 자전거 도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개선하고 조경과 녹지도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를 관리해야 하며 대림역 근처는 화장실이 없어 하천 이용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으므로 방안을 마련하고 도림천 유지용수 확보 사업은 추진이 부진한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5. 하수관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철저한 점검 및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
6. 녹번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당초 계획에 없던 투자심사 등과 같은 절차가 추가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것.

7. 서울시 하천 내 다수의 석면 조정석이 존재하고 있으나 비산방지제 도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석면 제거라는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비산방지제 원료가 수용성으로 파악되는바 하천의 특성과 상충하므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실외 공기 중 석면측정 방법은 정확도가 부정확하므로 보완할 것.
8. 하수관로 준설에 따른 준설토 중간 적치장이 주거단지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있어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 적치장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9.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을 인터넷으로 예약함에 있어 디지털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주민수요가 높은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층을 고려하여 시설(파크골프장 등)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0. 안정적인 하천 수질관리 및 하수처리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유출지하수 수질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동일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시설물에 유출 지하수 정수시설을 강제 설치토록 하거나 하천 방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11. '22~'23회계연도 하수도요금 체납진수 및 체납액을 살펴보면, '납세태만' 사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예금, 직장 등을 철저히 조사해 압류 조치하고,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강제 공매 처분을 단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
12. 물재생센터에서 운영 중인 관사 이용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직원 간에 입주 조건 등에 대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서운로 저지고지수로 정비' 사업이 지장물 이설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자치구에만 사업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물순환안전국에서 관련된 기관과의 협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사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14.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한 물재생센터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활용하여 물재생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지역거점화, 운영방식 다각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5. 물재생센터 수질계측기가 제조사 폐업, 외산 물품 사용 등의 사유로 고장이 난 채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데 제품 구매 시 A/S에 대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걱정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16. 서울시는 현재 하천 조경석에 대한 석면 농도를 1년에 한번씩

조경석 주위의 공기질로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경석의 마모 및 훼손으로 인한 도포의 벗겨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석면농도 측정인 만큼 더욱 정밀한 석면 농도 측정 및 안전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

17. 사평역 주변 유류오염 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최근에도 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바 시민의 보건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8.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일부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오염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된바 조속한 조치와 함께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시민의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 정화기간 안에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9. 서울시 관내 하수관로 준설과 관련하여 자치구가 제출한 설계량과 실제 준설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학적인 준설 설계량 산출 기준을 마련할 것.

20. 물재생센터 계면측정기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 특허를 가진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점에 대해 감사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동일한 문제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21.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물순환 관련 정책 내용이

부실하거나 현행화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개선토록 할 것.

22.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로 초과부담금을 납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바 물재생센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23.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구두질의] 현재 서울시에 폭우 대비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이 1개소(양천구)만 설치되어 있어 폭우 발생 시 저류시설이 없는 강남권 등에서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기 바람. ([붙임]연번5 참조)

24. 현재 서울시내 물재생센터의 경우 직영과 공단 관리대행 체제로 이원화하여 운영 중인 상황임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기 바람.

25.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와 관련하여 좀 더 적극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8건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상반기 종합감사에 따르면, 동일·유사 공종의 경우 통합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한바 부서 내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 물재생센터에서 운영 중인 관사 이용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직원 간에 입주 조건 등에 대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고, 다른 공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정량적 지표 개선을 노력하는 등 경영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
4. 물재생센터 수질계측기가 제조사 폐업, 외산 물품 사용 등의 사유로 고장이 난 채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바 제품 구매 시 A/S에 대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5. 물재생센터 계면측정기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 특허를 가진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점에 대해 감사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

지 동일한 문제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6.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로 초과부담금을 납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바 물재생센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7.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자체감사 중 경고처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정년에 따른 당연면직으로 처분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징계대상이 처분을 받기 전에 퇴직하여 공단에 재산상, 행정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8. 서남물재생센터 1처리장 포기조 덮개와 슬러지처리시설 강판이 부식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한편, 유해가스 관리 건축물의 시건장치가 미관리 되는 등의 문제가 파악된바 이를 조치할 것.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41 건

1. 강교의 경우 최종 도장에서 현장 거치까지의 시간 간격을 줄이는 것이 교량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예산절감을 위해 강교 거치기간을 최소화할 것.
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공사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설, 교통소통대책 모니터링,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정밀안전점검 등의 용역을 설계변경으로 시행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적절한 행정 주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3.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빗물저류배수시설 사업이 곧 발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와 같이 설계변경,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4. 공사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임금체불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5.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가 최초 계획에서 공사비가 3배 증액되고 공사기간도 약 3배가 연장되었는데, 더 이상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준공예정인 2025년 6월까지 만전을 기할 것.
6.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 중 실시 설계자의 과실로 공사가 연장되고 공사비가 증액된바, 설계자의 과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것.
7. 설계사와 공사 감리사가 같은 경우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문제

가 발생한 경우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

8. '청렴행정시스템 대내외 협력사업'에 대해 재평가하고 변화된 건설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방침을 세울 것.
9. '국회대로 지하철도 및 상부공원화' 비개착공법과 관련해 구조 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
10.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대부분의 층에서 설계가 변경되고 방수공법 변경도 여러번 이루어졌다는 점으로부터 초기설계가 부실했다 보이는바, 초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사업의뢰부서 및 향후 운영부서 등과 충분히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 서울시가 UN개발계획과 공유하는 청렴건설행정시스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가에 지속적인 지원 및 운영기술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2.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고' 현장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추진실태 적정 여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미흡 및 안전관리 소홀로 벌점부과처분을 받았으며 2023년에만 안전사고가 3건이나 발생한바,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3.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공사와 같이 공사가 준공된 후에서야 부실이 확인되어 벌점 부과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는바, 공사 중 현장에 부실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14. 대형공사와 같이 컨소시엄으로 여러 업체가 공사를 진행중에

부실벌점이 부과되는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실제 벌점보다 매우 작은 벌점이 부과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

15. 건설공사 중 부실벌점을 부과받아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시 심의토록 하는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위원 인력 풀에 벌점부과를 받은 민간업체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심의위원 위촉 기준을 개선토록 할 것.
16. 공사중 사토장 개선정으로 사토 운반거리가 증가하게 되면 이는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바, 설계 시 사토장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17.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실시한 부적합자재 현장점검반 점검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현장에서 자재 품질 부적합 적발 사례가 발생한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
18.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현장마다 별개의 스마트 안전기술 발주보다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역단위별 연간단가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9. 동절기 콘크리트 부실 양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중콘크리트 양생 관련 품질관리에 유의할 것.
20.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 현장 중 지하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구획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계획을 변경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철저히 마련토록 할 것.

21. 현재 설계중인 서남병원을 비롯하여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시에는 스마트안전 시스템을 적용할 것.
22.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23. 해체공사장에 대한 근로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공사장 주변 건물 및 보행자 안전확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24. 서울시 발주공사장의 감리 근무현황을 점검할 것.
25. 방음터널이 방음벽에 비해 소음 및 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나나 화재위험성이 높고 공사비 증액이 크게 발생하는바, 방음터널보다는 저소음포장이나 방음림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방음벽 설치를 우선할 것.
26. 광화문광장조성사업 시 설계자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투수형 침투측구를 유공형으로 설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공사편의성 보다는 설계자의 설계 취지를 우선할 것.
27. 관급자재 조달에 협조적이지 않은 자재 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벌칙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
28.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일정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고지할 것.

29. 해체공사장 가설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을 제도화할 것.
3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정기점검과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조치가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사후점검을 철저히하고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꾸준히 확인할 것.
31. ‘청계천~정릉천 자전거도로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원설계가 부실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바, 사업주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설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
32. 관용차량을 이용함에 있어 차량일지 및 연료 주유내역을 철저히 작성할 것.
33. 불필요하게 고가인 휘발유 주유는 지양하고 관용차량을 주유함에 있어 본부에서 주로 이용하는 주유소와 가격협의를 실시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할 것.
34.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공사가 지연된바, 설계 및 공사 실시 전 주변 사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공사지연을 최소화 할 것.
35.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으로 공사기간이 당초 19년 3월에서 25년 6월까지 연장된바,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개최시 지역 현안에 밝은 시의원과 구의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36. 신림봉천터널 공사 초기 단계에서 철저한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공사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하나 충분치 못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공기가 연장되고 있는 바, 향후 사업계획 변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37. 신림봉천터널은 연장이 긴 터널이므로 기존 방재기준 및 방재 대책보다 대폭 강화된 방재시설이 필요한 바, 방재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것.
38. 신림봉천터널 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및 공기연장으로 인해 사업비 증액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추가 공기연장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39. 터널 화재는 화재발생 3분 이내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한바, 물분무시설 외에도 초기화재 진화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화재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40. 신림봉천터널은 최초 사업계획변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어야 하나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및 반대 민원에 대한 설득 부족으로 인하여 지속적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한 바, 향후 추가 사업계획 변경이 없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을 수행할 것.
4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양화인공폭포 공사'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2020년 5월 21일)를 거쳐 양화폭포의 규모, 재질 등에 대한 사항이 결정되었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을 진행(2020년 9월)하였으나, 그 과정 중 전문가검토의견서를

위조 및 행사(2020년9월)하여 특정기술 심사 자료로 사용되었음. 또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 시 무단 변경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에게 공식 배포하여 진행하였음. 서울시가 배포한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 안내문’ 내용 중 입찰 시 유의사항에 따라 본 심사의 입찰(낙찰 또는 협약)은 취소 또는 해지 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발주처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도기본에서 진행중인 ‘양화인공폭포 공사’를 중지하고, 위법사실로 진행되었던 양화인공폭포 공사의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함. ([붙임]연번6 참조)

[기술심사담당관] — 13 건

1. 설계심의 사후평가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설계심의 사후평가 시 설계심의에서 지적받았던 의견이 미반영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설계심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것.
3.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특정 위원만 현장 점검을 나가는 쏠림 현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4. 신기술의 경우 국내에서 활용되어 해외시장에도 진출한 기술이 있는 등 우수한 신기술들이 존재하므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6. 품질시험소는 서울시의 건설자재 품질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임에도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능력이 미확보되어 서울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외부 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고 있는 문제가 파악되었으므로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능력을 확보토록 할 것.
7. 품질시험소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유해

화확물질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환경부 등에서는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1급 발암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품질시험소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8. 서울시는 '21년~'22년까지 점검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건설현장에 대해 평가 결과 등을 건설알림이에 공개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된바, 이를 개선토록 할 것.
9.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이 '16년을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법률, 조례, 고시 등의 최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편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0. 품질시험소는 건설 현장 부적합 자재를 점검함에 있어 부적합 자재에 대해 단순 반출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 등의 행정처분 방안을 검토할 것.
11. 품질시험소의 전기자동차 수리 재검정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된 내년도 검정장비 구매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준비가 미진하다 판단되므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에 대응하기 위한 재검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12. 품질시험소 내 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가 34%에 이

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바 품질시험소의 데이터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실행가능한 중·장기적인 장비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것.

1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설계평가 회의에 대한 속기록, 채점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일정기간만 공개하는 등의 문제가 파악된바 위원회 운영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시행할 것.

나. 건의사항 27건

[재난안전관리실] — 6 건

1. 평창터널 설치와 관련하여 차량정체, 환경개선, 역사문화지구 훼손 여부, 성북구민의 안전을 고려할 것.
2. 자치구에 위임중인 가로수 관리를 도로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코로나19 방역물품 중 체온계는 육아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하여 2024년도 정부 예산이 13% 가량 삭감됨에 따라 서울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바, 재난발생 시 서울시 재난안전통신망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예산 증액 등을 정부에 건의할 것.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중랑천 제1체육공원과 동부간선도로 간에 연결되는 통로 일부가 별도의 통제 없이 개방되어 있으나, 이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일반 시민의 통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전자식 차단기 도입이나 감시소 배치 등 시민의 통행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붙임]연번7 참조)
6.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준비와 홍보, 소통과 음식부족 등으로 불만과 아쉬움이 적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예산과 행정낭비를 줄이고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폭을 확장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붙임]연번8 참조)

[물순환안전국] — 10건

1. 대림3 빗물펌프장의 노후화된 유량계 교체와 함께 신기술이 적용된 유량계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 우천 시 자동으로 개폐되는 자동화 빗물받이 등 신기술이 활용된 제품을 적극 도입해 주기 바람.
3. 물재생센터 직원 관사(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하니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4. 현재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침수피해를 저감 할 수 있는 단기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5. 2개 이상의 자치구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에서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6. 물재생센터 주민편익시설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람.
7.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 주기 바람.
8. 현행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해제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모두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장이 감면사유 해제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감면대상이 감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람.

9. 안양천에 추진 중인 '수변감성 차크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10. 행정사무감사 자료(공사계획평면도) 제출이 미흡하므로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해 주기 바람.

[물재생시설공단] — 2건

1. 물재생센터 직원 관사(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하니 환경개선사업 추진해주기 바람.
2. 물재생센터 주민편익시설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2 건

1.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친환경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구로구 주민 등 주변 주민과의 소통을 이루면서 추진할 것.
2. 신림봉천터널 공사 시 스마트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

[기술심사담당관] — 7 건

1. BIM 적용지침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 내 과업이 서울시 실정에 맞도록 과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2.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을 개최함에 있어 보다 많은 기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신기술이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 소개의 장을 확대 운영해 주기 바람.
3.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인력 및 장비 확충방안을 철저히 수립하고 관련 기술 및 장비개발 등의 동향 파악을 수시로 해주기 바람.
4.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을 실시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관심 있는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
5. 올해 택시미터기 검정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초 세입 예측액 대비 적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세수를 산출함에 있어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를 해주기 바람.
6. 외부전문가 기동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위반주체에 대한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건설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해주기 바람.

7. 공무원 직접감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업체의 반발이 심해 사업추진 내용을 전면 수정한 바, 민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철저한 사전조사에 따른 협의 후 시행하기 바람.

다. 기 타(자료제출 등) 56건

[재난안전관리실] — 16 건

1. 투수블록 성능회복사업 장비확충계획, 정비물량을 포함한 실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자료
2. 송파안전체험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참여조건 등 계약 제반사항 검토 자료
3. 평창터널 관련 연구용역보고서(PMAC 22년)
4. 평창터널 관련 2022년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수정제안서
5.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설명회 시 평창터널 재추진 요청 민원 관련 세부내용
6. 평창터널 설치 반대 민원내역
7. 시민안전보험 사업의 2022년도 홍보비 미편성 사유
8.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보험료가 매년 과하게 증가한 사유
9. 고성능 CCTV 설치계획(지역별) 조사 자료
10. 터널별 방재시설 현황(미비점 포함) 자료
11. 지하철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계획
12.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재구축 용역업체의 대표이사가 사업책임

기술자가 아닌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유.

13.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재구축 용역의 입찰공고가 '긴급'으로 공고된 사유.
14. 최근3년간 긴급복구 기동반 공무원 근무(처리내역) 일지(도로관리과)
15.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반대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
16. 금천구 시흥동 건립 청사 중 주민편의시설로 운영되는 시설의 건립 경위, 조성 경과, 운영수입, 임대료에 대한 정산자료

[소방재난본부] — 11건

1. 특수방화복 세탁기 현황 및 '24년도 특수방화복 전용 세탁기 구매 추진계획
2. '24년도 특수방화복 관리 방안(전용 세탁기,외부 위탁 등)
3. 서울시 119구급차 현황 및 최근 2년간 신고 접수 및 소방관 서별 구급 출동 현황
4. 최근 1년간 응급실 이송 현황 및 이송 거부 사례 현황(발생 장소 및 사유 포함)
5. 서울시내 가스계소화설비 설치 대상 현황
6. 한강안전시스템 유지 관리업체(IT 지원기술자 포함) 현황
7. 근무체계 개선에 대한 현황과 기대효과 자료
8. 소방서 초도방문 시 청취한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
9.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비율 관련 소방노조 요구에 대한 대응 및 협의 자료
10. 구급차 내부 CCTV 운영의 문제 현황
11. 관용차량 사용 내역 중 지적사항(목적지를 숫자 등으로 입력, 용무 기타로 기입 후 목적지를 노래방 등으로 입력, 운행시간 1,620시간 입력)에 대한 해명자료

[물순환안전국] — 12건

1. 도림천 관련 자전거 도로, 조경, 화장실, 유지용수 현황.
2. 하수관로 보수·보강 사업 관련 굴착, 비굴착 예산편성 현황.
3.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횟수, 방법, 항목, 기준, 절차 등 관련 자료.
4. 지하공동구 노후시설 조사 후 보고 자료.
5. 하수도 사용료 체납분 징수방안.
6. 하수관로 준설 관련 설계물량과 정산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처 계획.
7. 용산역 일대 유류오염정화 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 누락된 연도 자료 제출.
8. 중량물재생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3처리장 초침 슬러지 계면 측정기 제조구매 설치」 사업 입찰 과정 및 결과 자료.

9. 하수관로 보수보강 '23년 공사 시행현황, 신기술 등 심의 개최 계획 및 도입현황.
10. 물순환안전국에서 운용 중인 관용차량(61우 8102) '21년 사용내역.
11.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자료 및 주민 의견 취합 자료.
12. 서울시 하천 조경석 주변 공기측정 및 하천별 검사 자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13 건

1. 월드컵대교 복단 접속교가 제작장 도장 후 거치까지 17개월이 소요된 사유
2. 개통 예정 도로의 교통소통대책 모니터링을 공사비에 포함시켜 실시한 사례 제출.
3. 도기본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4.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중 철거공사 하도급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가 지연된 사유.
5.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실시설계 완료 후 단계별 구조 안전성 검토 자료 제출.
6. 2016년도 이후 서울시 청렴건설행정시스템 추진현황(지원국가)
7.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 진행 상황 및 준공계획 자료.
8.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의 온도측정 자료.
9. 신림-봉천터널 공사지연 세부 사유.
10.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제출.
11.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 관련 현장조사 없이 실시설계자에 대한 처벌조치 후 결과 제출할 것.

12. 신림봉천터널 공사 관련 주민 민원 내용, 조치 결과, 향후 처리 계획
13.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각 터널 화재사고 발생 및 조치 현황,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기준

[기술심사담당관] — 4 건

1. 품질시험소의 가설기자제 품질시험 능력 확보 방안
2.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 주요 계획 및 성과 내용
3.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건설현장 점검에 대한 사후 조치현황
4.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선 방안

[붙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사항

[붙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사항

연번	1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 건설시 꼼수 방지 방법		
현황 및 문제점	터널이나 지하차도 구간은 100미터 이상일 때와 100미터 이하일 때 시설물의 설치가 달라집니다. 100미터 이하이면 소화기와 조명시설 만 설치하면 되지만, 100미터 이상이면 환풍구와 탈출구 시설 등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언급하는 이유는 100미터를 기준으로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나 터널, 고가교 등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악용하여 길이를 100미터 이하로 할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미 제주도에서 95미터짜리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했다고 합니다.		
개선 건의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나 터널, 고가교 등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시민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만들어지면 이용만 합니다. 이런 사항을 감독할 관청인 서울시는 그런 역할을 할 능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관련 시공사나 시행사나 모두 감독하는 기관이나 서로 안면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점에서 서울시 의회에서 엄격하게 조례를 제정하여 임의로 지하차도나 터널, 고가교 등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을 줄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회 의원들.. 건축과 관련 없는...과 시민들로 구성된 현장 확인단을 만들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계획	1. 조례제정 (임의로 길이 단축 방지) 2. 서울시 의회 의원들.. 건축과 관련 없는...과 시민들로 구성된 현장 확인단 실사		
기대 효과	서울시민의 안전은 이미 7-8월만 되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미 강남일대가 물바다가 되었었는데, 이에 대한 보안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지하가구에 대한 대응책도 유애무야입니다. 오송지하차도의 참사가 또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확실히 확인하고 확인하는 서울시 의회가 되는데 이 제안은 기여할 것입니다.		

연번	2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청담대교 남단과 학동로 연결 공사 중단 관련 행정 사무감사 요청		
내용	<p>안녕하십니까?</p> <p>표제건 관련하여 현재 민원인이 서울시 도로계획과 관련 직원분들과 2023년 7~9월중 몇차례 유선 통화한 결과;</p> <p>1.청담대교 남단과 강남구쪽 학동로 램프 연결안은 (강북 주민들의 강남 접근 편의성 제고가 목적. 현재는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일원동까지 내려가서 진입해야 하는등 매우 불편) 최초 1999년 12월 청담대교 개통 당시에 같이 연결되었어야 (당초 청담대교 설립 목적과 기능중의 하나) 하나, 학동로쪽 청담 삼익 아파트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조망권등 경관 저해 및 학생 통학 안전이 반대 이유) 실제 연결을 위한 건설 과정중에 (램프 연결을 위해 경기도 사거리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도로 연장 건설등 비용 이미 일부 투입) 오래전 중단되었고,</p> <p>2. 이후 서울시는 삼익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 최소화 및 원활한 공사를 위해 삼익 아파트 재건축 과정과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되어 2025년 9월 드디어 입주 예정) 연계해서 계획에 반영하고 지속 추진하기로 민원인들과 2008~2010년사이에 對서울시의회 공식 답변 (당시 박래학 시의원 상대 의회 질의 답변중)과 단체 민원 회신에서 서울시 본부장과 도로계획 과장이 각각 약속하였으나;</p> <p>3. 13년이 지난 2023년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이 전혀 없어 왜 동 사업 검토가 (현재 삼익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 진행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면 중단되었는지 이유에 대해 서울시청 도로계획과에 수차례 문의해 보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답변뿐이라 서울시의회에 이에 대한 행정감사를 부탁드립니다.</p> <p>즉, 요약하자면 현재 상황은</p> <p>1) 2008~2010년 당시 사업성 분석 결과 청담대교 남단과 학동로 연결 과제는 (당초 청담대교 설립 목적과 기능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사업성이 1이 넘는 것으로 나와 추진 가능한 과제였는데 현재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상태</p> <p>2) 서울시는 삼익 아파트의 재건축과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2008~2010년 고위 간부들이 강북 지역 (광진구) 주민들에 공식 약속하였으나 알수 없는 이유로 현재 중단된 상태</p> <p>3) 이미 일부 건설이 진행되어 비용까지 투입되었으나 (램프 연결을 위해 경기도 사거리에서 청담대교 남단 인근까지 도로 연장 건설까지 해둔 상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공사 중단에 따라 기 투입된 예산이 매몰 비용화 될 가능성 우려</p>		

4) 청담대교 남단 인근까지 연결된 해당 공공도로는 공사 중단에 따라 당초 목적과 틀리게 인근 주민들의 정원처럼 20년이상 (강남 핵심부지가) 어정쩡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황당한 상황

5) 서울시 도로계획과는 검토가 중단된 이유에 대해 알 수 없다고만 하는 상황

참고로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에서도 서울시 고위 간부들이 공식 약속했던 해당 과제를 중단한 원인에 대해 도로계획과에 직접 문의해 보았으나 (충분히 답변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알 수 없다는 답변뿐이라 옴부즈만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왜 알 수 없다고만 답변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함) 민원인에게 다른 방법으로 다시 민원을 넣어보라고 제언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최초 청담대교 설립 (1999년 개통) 목적과 기능에 대교 남단과 강남구쪽 학동로 연결안이 포함되었었다는 근거

1) 2010년 서울시 김영복 도로계획과장의 당시 강북지역 (광진구) 주민들의 단체 민원에 대한 공식 서면 답변중 일부;

“청담대교 남단 램프는 청담대교 건설당시(1999.12월 개통) 동부간선도로에서 강남지역으로 연결되는 **진출 램프를 학동로에 접속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주민 (삼익아파트)의 극심한 반대로** 램프를 설치하지 못함”

2) 2010년 당시 도로계획과 담당자였던 박운용 과장 의견 (2023년 8월 민원인과 직접 유선 통화중);

“ 지금도 덩그러니 청담대교 남단에 설치되어 있는 **교각은 원래 학동로와 연결하기위해 건설한 것인데** 그 과제가 아파트 주민들 **반대로 중단된후 더 이상 진행이 안되었음**”

※ (아울러, 나무위키에도 위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음)

→ 그러나 현 담당자인 박성웅씨는 전임 박운용 과장과 나무위키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며 해당 교각은 다른 목적으로 (올림픽대로 연결용. 오래전 공사 중단되어 이미 매몰 비용화 됨) 건설한 교각이라고 부인한 바 있음. 그러나 어쨌든 박성웅씨도 애당초 **청담대교 설립 목적과 기능에 대교 남단과 강남구쪽 학동로 연결안이 포함되었었다는 사실은 인정**

2. 서울시가 1999년 학동로 연결을 실제 진행하다 중단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 반대가 큰 이유) 이후 9년만에 다시 재개를 검토했던 근거

1) 2008년 서울시 김상범 도시교통 본부장의 서울시 의회 답변중 일부;

“청담대교의 진입로가 불편한것은 알고 있다. 그것을 개선하려면 주변 여건을 좀 봐야한다. 청담대교 남쪽에 학동로쪽으로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기능상 맞다고 생각하며 (삼익과 홍실아파트) 재건축때까지 기다려서 공간을 내어 연결도로를 만들기로 계획하고 있다.”

2) 2010년 서울시 김영복 도로계획 과장의 강북지역 주민들의 단체 민원에 대한 서면 회신중 일부;

“인근 아파트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램프를 설치하지 못하였음. 그 이후 재검토 과정에서 도곡로 접속안, 역삼로 접속안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주변여건 및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원안인 학동로 접속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아울러 연결을 위한 램프 설치에 해당 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감안하여 향후 삼익아파트 및 홍실아파트 재건축사업(2002년 조합설립, 2015년 경 추진예정)과 더불어 연계하여 검토할 예정임”

3. 위처럼 서울시가 학동로 연결안을 실제 계획에 반영 및 지속 검토하겠다고 (2008~2010년) 언급한 과정에서 핵심 요소였던 인근 아파트 (삼익)의 현재 재건축 진행 상황

- 1) 재건축 조합 설립: 2003년
- 2) 용적률및 임대주택포함등 확정후 재건축 추진안 서울시 통과: 2013년
- 3) 사업시행인가: 2015년
- 4) 관리처분 : 2017년
- 5) 철거시작 : 2020년
- 6) 입주 예정 : 2025년 9월

4. 위처럼 인근 삼익 아파트 재건축 일정과 연계해서 추진 하겠다는 학동로 연결과제의 실제 진행 상황

1) 정한민씨 의견 (직전 담당자, 2023년 7월 서면 및 유선 통화에 근거)
① “2010년 서울시의 학동로 연결안 추진에 대한 공식 입장 이후 (삼익 재건축 아파트의 2025년 입주가 2년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실제 검토 및 진행된 것이 10년이 지나도록 전혀 없음”

② “2010년 당시 도로계획과에서 도곡로, 역삼로, 학동로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끝에 학동로 연결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었다고 하나 2010년 전후를 기준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한 검토 자료는 찾을 수 없음”

③ 당시 본부장 및 과장의 설명대로 삼익 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하여 추진 했으면 좋았을텐데, 재건축이 마무리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이미 늦었고, 따라서 동 학동로 연결안은 현실적으로 장기간 재개하기 어렵게 됐음.(당시 담당자들이 왜 재건축과 연계하여 지속 검토를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음)

2) 박운용 과장 의견 (2010년 당시 담당자, 2023년 8월 유선 통화에 근거)

① “2010년 당시 도로계획과 담당자였던 내가 민원 답변한대로 도곡로, 역삼로, 학동로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끝에 학동로 연결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었고 **아파트 주민들 반대로 향후 삼익 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② 당시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이 불투명했고 실제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2014년 내가 타 부서로 이동하기전 까지 **검토하거나 추진된 것이 전혀 없었음.** 아울러 내 후임자들도 진행하는 것이 아마 없었을 것임”

③ “어쨌든 지금이라도 당시처럼 다시 민원을 내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교통 수요등을 재검토**하여 (내가 검토했던 자료는 이미 오래되서 활용하기 어려울 것임) 내가 검토했던 당시처럼 사업 타당성이 실제 나온다면 (이미 교각등 투입된 비용도 있으므로) **학동로 연결 사업 재개를 할수도 있지 않겠나?”**

▶ 이에 대한 민원인 의견:

삼익 아파트는 위의 3번에서 서술한 것처럼 **당시 재건축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2013년에** 용적률, 임대아파트 방안등을 확정하여 **서울시 재건축 심의까지 통과하여 전체 재건축 과정중의 철부능선에 다다른 상태**였고 **2015년에 드디어 사업시행인가까지** 났는데 **당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어 학동로 연결안 검토를 지속하지 않았다는** 당시 담당자 (2014년까지 도로계획과 근무) **답변은 전혀 이해가 안됨**

3) 박성웅씨 의견 (현 담당자이자 정한민씨 후임. 2023년 8월 서면 및 유선 통화에 근거)

① “전임자인 정한민씨 말처럼 2010년 당시 도로계획과에서 도곡로, 역삼로, 학동로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끝에 학동로 연결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었다고 하나 **2010년 전후를 기준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한 검토 자료는 찾을 수 없었고;**

② **2003년에** 도곡로, 역삼로, 학동로 연결안등을 사업비 규모, 경제성, 공사 난이도등 여러 요소를 놓고서 종합 검토한 끝에 **오히려 도곡로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낸 자료는 있음”**

③ 어쨌든 당시 담당자는 (박운용 과장) 2010년 민원 답변에서 **학동로 연결안이 가장 사업성이 있다는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했을 것이고** (그러나 박성웅씨 말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학동로 연결안이 타당하다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음) 아무런 검토 자료도 없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민원 회신하지는 않았을 것임

5. 민원인 감사 요청사항

1) 2008년과 2010년에 서울시 본부장과 과장은 **인근 삼익 아파트의 재건축과 연계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실제 계획에 반영하고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서울시 의회와 주민들에게 보고**하였고 실제 해당 아파트는 그이후 **재건축이 상기 3번처럼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왜 해당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이 전혀 없고 불투명하다는 사실과 완전 틀린 이유를 내세워 (공개 설명과 다르게) **2010년 이후 검토를 전면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공사 재개를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

▶ 이에 대한 서울시 도로계획과 현 담당자의 황당한 답변

① 당시 검토 중단된 사유가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음 (이에 민원인은 “2010년 이후 아무도 검토조차 안했으니 중단된 이유가 나와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였으나 현 담당자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음)

② 당시 여러 전임 담당자들 (길게는 9년전 담당자부터 최근 담당자까지)을 찾아서 중단된 이유를 물어 볼 수는 있겠으나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설령 그들이 답변을 해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여전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음

③ 2014년 담당자인 박운용과장이 상기4-2)번처럼 중단된 이유를 민원인에 명확하게 설명했다고는 하나 역시 오래전 일이고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그 답변을 신뢰 할 수 없음

▶ 서울시 도로계획과 담당자 의견에 대한 시민감사 옴부즈만 의견

① 도로계획과는 중단된 사유에 대해 전임 담당자들에 물어보든 다른 방법으로든 민원인에 팩트에 근접한 답변을 해주어야 함. 사람의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알 수 없다고”만 민원 회신 하는 도로계획과 답변 행태는 이해가 안됨.

② 도로계획과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문의해도 알 수 없다고만 회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로서도 방법이 없음. 민원인은 다른 경로 (다른 기관)로 민원을 다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임.

▶ 서울시 도로계획과 담당자 의견에 대한 민원인 의견

① 2010년 이후 검토를 중단한 사유가 나와 있는 자료가 없다는 도로계획과 답변은 2010년 이후 아무도 검토를 안했으니 그런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닌지?

② 도로계획과는 서울시장이 해당 과제의 중단된 이유를 직접 물어봐도 (전임 담당자들도 사람이라 사람의 기억력은 정확하지 않으니) 알 수 없다고만 답변할 수 있는지?

③ 민원인은 2014년까지 근무한 전임자와 (현 담당자들이 전임자와 통화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어렵게 통화해서 명료한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왜 도로계획과는 그런식으로 문의를 해서 (사람의 기억력은 오래된 사안에 대해 정확하지 않다고만 하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인지?

2) 도로계획과에 따르면 서울시 내부 민원 시스템을 제목으로 검색해보니 동 사안 (학동로 연결 민원)이 마지막으로 검토된 2010년부터 올해 2023년 까지 유사한 민원이 2012년에 1차례, 2021년에 2차례 더 있었다고 함. (제목외에 내용으로 검색하면 추가 유사 민원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검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렇게 까지는 못했다고 함)

그렇다면 이 기간동안 해당 아파트는 한참 재건축 과정이 원활히 진행중 이었고 민원도 계속 들어 왔는데 검토를 지속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청담대교 남단은 학동로와의 연결을 위해 경기고 사거리에서 한강 인근 (대교 남단 근처) 까지 오래전 도로 연장 시공해둔 상태이고 그후 공사가 중단되어 해당 공공 도로부지는 사실상 인근 아파트 전용 앞마당 정원처럼 23년간 방치 되어왔는데 이 핵심 거대 공공 부지를 앞으로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애당초 청담대교 설립 목적대로 학동로 연결 안이 타당한바, 검토 중단 이유에 대한 행정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고

첨부파일 1개

연번	3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서울시내를 야간에 다니다 보면 솔라표지병들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관리나 점검은 어떻게 되나요?		
현황 및 문제점	서울 시내를 야간에 다니다 보면 솔라표지병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주변의 구로구나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아스팔트와 평평하게 설치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다소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 보행자 또는 여성 안심 귀가를 위해 설치했다고 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다른 면보다 미끄러워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가 솔라표지병을 지나가다가 휘청거리는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안양천 범람시 솔라표지병이 홍수에 쓸려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개선 건의	1. 시민 안전 2. 솔라표지병 교체나 수리시 걸리는 기간 3. 솔라표지병 설치 및 관리, 점검 방법 4. 공무원들이나 시행업체의 현장확인 및 점검 방법 (주간/야간 횡수 포함)		
세부 계획	1.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이나 조치가 있는지? 2. AS 기간이 1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고장난 솔라표지병 교체나 수리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최장 / 최단 기간) 3. 설치 후 관리와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4. 공무원들의 현장확인 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설치된 솔라표지병의 불량인지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했는지? 5. 솔라표지병의 특성상 작동여부에 대해서는 야간에 확인이 가능한데, 시행업체나 공무원들이 얼마나 밤에 나와서 확인했는지?		
기대 효과	시민들의 세금으로 설치된 솔라표지병이 목적에 맞게 잘 이용되도록 설치된 이후에는 관리 및 점검이 중요한 만큼 솔라표지병 교체나 수리시 걸리는 기간, 공무원들이나 시행업체의 현장확인 및 점검 방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솔라표지병이 다른 면보다 미끄러워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가 솔라표지병을 지나가다가 휘청거리는 경우 등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고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번	4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인파 운집 방지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되었음에도 안전 강화와 직결되지도 않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 낭비에 가까운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 레드로드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제보		
현황 및 문제점	<p>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는 소위 레드로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운집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붉은색 미끄럼 방지 포장재를 도로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억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설치되는 레드로드는 보통 6개월 이상 지나면 갈라지는 아스콘 재질로 깔리는 사업으로서, 평지인 홍대입구역 근처에 있어, 붉은 색이 참사 방지 및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홍대입구역 근처 도보랑 찾길이 좁은 것은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장사하는 분들의 공간을 빼앗았다는 의견도 큰 상황입니다.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예산이 평지에 붉은색 아스콘이 깔리는 상황, 붉은 색이 인파 운집을 직접 막을 수 있기는 커녕 오히려 끌어당기는 현 상황, 해당 예산을 다른 재난 예방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에 쓰는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여 이에 아래와 같이 제보드립니다.</p>		
개선 건의	아래와 같이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되었음에도 안전 강화와 직결되지도 않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 낭비에 가까운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 레드로드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제보를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세부 계획	<p>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되었음에도 안전 강화와 직결되지도 않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 낭비에 가까운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 레드로드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 평지라 미끄럼 방지가 필요 없고, 안전과 직결된다고 보이지 않는 레드로드 사업이 4억이나 들여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2. 레드 아스콘이 6개월 정도 지나면 갈라지고 깨지는 문제가 발생함에도 해당 재질을 쓴 이유와, 3. 해당 예산을 다른 인파 운집 방지를 위해 쓸 수 있었나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대로 밝히는 것을 제안드립니다.</p>		
기대 효과	<p>이를 통해 평지인 홍대입구역 근처에 있어, 붉은 색이 참사 방지 및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해당 예산을 다른 인파 운집 방지를 위해 쓸 수 있었나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대로 밝힘으로서, 서울 시민들의 혈세가 보다 제대로 된 곳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파 운집 방지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되었음에도 안전 강화와 직결되지도 않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 낭비에 가까운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 레드로드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제보를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연번	5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폭우 대비 빗물 저장시설, 서울에는 단 1곳만 설치된 이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제안		
현황 및 문제점	<p>현재 서울특별시에는 폭우 대비 빗물 저장시설은 단 1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급인 부산광역시에 8곳, 경남 18곳, 전남 17곳, 전북 17곳, 충남 7곳에 우수저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에는 유독 1곳만 설치 올해 벌어졌던 폭우 상황과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경우, 우수 저류 시설이 없는 강남권 등에서는 폭우 발생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작구나 마포구에 설치 논의가 있었으나 중단된 사례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p>		
개선 건의	<p>이에 폭우 대비 빗물 저장시설, 서울에는 단 1곳만 설치된 이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제안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p>		
세부 계획	<p>폭우 대비 빗물 저장시설, 서울에는 단 1곳만 설치된 이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폭우 대비 빗물 저장시설, 서울에는 단 1곳만 설치된 이유에 대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 감사하고, 2. 차후 대책에 대해 철저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	<p>이를 통해 부산에만 8곳인 폭우저장시설이 유독 서울에는 1곳에만 설치되어, 매년 폭우 발생시 피해가 대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철저히 행정사무감사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폭우 대비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폭우 대비 빗물 저장시설, 서울에는 단 1곳만 설치된 이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제안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연번	6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양화인공폭포 공사 공사를 중지하고 위법사실로 진행되었던 양화인공폭포 공사의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 바로잡아 줄 것.		
세부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 공사명 : 양화인공폭포 공사 ></p> <p>'양화인공폭포 공사'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2020년 5월 21일)를 거쳐 양화폭포의 규모, 재질 등에 대한 사항이 결정되었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을 진행(2020년 9월)하였으나, 그 과정 중 전문가검토의견서를 위조 및 행사(2020년 9월)하여 특정기술 심사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p> <p>또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 시 무단 변경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에게 공식 배포하여 진행하였습니다.</p> <p>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공식 배포한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 안내문' 내용 중 9. 입찰 시 유의사항 '자'항에 따라 본 심사의 입찰(낙찰 또는 협약)은 취소 또는 해지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발주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 안내문 4쪽 : 9.입찰 시 유의사항 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① 협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 ② 협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p> </div> <p>1. [2020년 05월 21일] 서울시 제3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조건부가결 통과. → 조건부가결 통과 내용 = 양화폭포 재질 : ECOROCK(천환경인조암) → 양화인공폭포 설제도면, 디자인 등 = 미주강화㈜에서 작성 및 제공.</p> <p>2. [2020년 09월]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 진행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미주강화㈜가 작성 및 제공한 자료가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 공식자료로 반영됨.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사전설명회 (2020년 9월 8일)에서 '참가업체 4개사'에게 배포 및 제공한 자료 중 '서울시 제3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가결 통과된 양화폭포 재질 : ECOROCK(천환경인조암)'을 특정기술 심사 시 '인조암'으로 절차없이 무단 변경함. (※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 안내문 내용에는 '도시공원심의(2020.05.21) 결과 반영을 준수할 것'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절차없이 무단 변경함) → 특정기술 심사 최종 낙찰자 : 4개사 중 (주)명산지에프알씨.</p>		

① [2020년 08월]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 전 인공폭포 현장답사 자료

→ 서울시, 설계감리, 설계용역사는 2020년 8월 6일, 8월 20일 참가업체 4개사 중 2개사의 인공폭포 현장만 답사(㈜명산지에프알씨 = 경인아라폭포, 미주강화㈜ = 광명동굴폭포) 하였고,

현장 견학 결과 ㈜명산지에프알씨(현재 낙찰자)의 현장에 대해서만 양화인공폭포와 규모 및 형태가 가깝다고 평가하였으며, 미주강화㈜의 현장답사지의 경우 양화인공폭포의 규모 및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현장을 답사하여 평가함.

(※ 미주강화㈜는 양화인공폭포처럼 2단(상부, 하부)구조이며 규모 및 형태가 비슷한 '인천 수봉공원 인공폭포'를 추천하였으나, 전혀 다른 '광명동굴폭포'를 현장 답사하여 평가 함.)

→ 2개사의 인공폭포 현장답사 자료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게 공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으나, '정보부존재'로 기각(각하)되어 회신됨. 그러나, 실제 자료의 서류는 존재 확인되었음.

※ 현장답사 참가자.

서울시 참가자 = 도기본 토목부장, 토목설계과장, 담당주무관외 3인,
 설계감리 참가자 = 제일엔지니어링 장종환 상무,
 설계용역사 참가자 = 동일기술공사 연용흠 전무 등 3인

※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2020년 09월) 당시 참가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구분	업 체 명	대표자	등록번호	2020년 시공능력평가액	비 고 (특정기술 심사 결과)
1	미주강화㈜	윤복모	광주99 -190002	9,809,472,000	4위
2	㈜명산지에프알씨	정영순	여주2007 -19-2	2,460,006,000	1위 (낙찰자)
3	레인보우스케이프㈜	정문익	서울92 -19-8	3,891,555,000	3위
4	㈜두리이앤씨	한창열	안양09 -17-02	-	2위

② [2020년 9월] 특정기술 심사 시 필요한 상정자료 중 '전문가의견서(검토의견서)'를 위조하여 '특정기술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

→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2020년 5월 21일)에서 조건부가결로 통과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는 "도시공원 심의 시 통과된 재질인 ECOROCK(천환경인조암)"으로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나,

발주처, 설계감리, 설계용역사가 모여 회의를 통해 수정을 지시하였고, 전문가의견서(검토의견서)를 위조하여 특정기술 심사 시 필요한 상정자료로 결재 후 특정기술 심사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음.

→ 2022년 01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문가의견서 관련 범죄사실(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유죄판결 확정 및 약식명령(피고인 신동민)을 함.

※ 전문가의견서 위조 관련자.

발주처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김종혁,

설계감리 = 제일엔지니어링 최종환,

설계용역사 = 태조엔지니어링 신동민

3. [2023년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위법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화인공폭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관련 건으로 소송이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태임.

① 입찰무효 등 확인 (특정기술 심사 무효) 소송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진행 중 상태.

② 설계비 등 청구 (양화인공폭포 설계비) 소송 건 : 서울고등법원 진행 중 상태.

결론적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중인 '양화인공폭포 공사'를 중지하고, 위법사실로 진행되었던 양화인공폭포 공사의 '특정기술 심사 및 입찰'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연번	7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동부 간선도로 회차로 관련		
현황 및 문제점	<p>현황 -중랑천 제1체육공원과 동부간선도로 간에 연결되는 통로 일부가 별도의 통제 없이 개방되어 있음. 문제점 -동부간선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차량 통행량도 많고 속도도 높아 일반 시민의 통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연결 통로가 별도의 통제 없이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좌우로 보이는 철제봉이 차단장비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차단장비라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넘거나 함부로 조작하기 쉬운 구조로 보임.</p>		
개선 건의	<p>-위기 상황 대응 등 여러 이유로 공원과 간선도로 사이의 회차로를 두는 것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음. -그럼에도, 과학적이고 일반 시민이 함부로 조작하기 어려운 형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태로 보임. -인근의 전봇대 등 전력을 활용한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함.</p>		
세부 계획	<p>*전자식 차단기 도입 -인근 광진구와 동대문구는 산책로 및 육교 일대에 전자식 차단기를 운용함. -따라서, 유사한 장비를 도입하고 유사시에 버튼 등으로 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CCTV와 통신장비를 구축하고 경찰 및 소방이나 관할 구청과 연결. *감시초소 및 순찰 도입 -서울시설공단 또는 관할 구청에서 순찰을 실시하고 관련 초소를 회차로 인근에 배치</p>		
기대 효과	<p>*전자식 차단기 도입 -수동식에 비해 인간의 물리력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는 통제 방안 -통신장비와 CCTV를 도입하면 인근의 특이 사항을 점검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음. *감시초소 및 순찰 도입 -중랑천 제1체육공원은 중랑천을 길게 따라 늘어져있고, 양 옆으로 간선도로와 축방이 높게 쌓여있는 구조 -위기상황 발생시 외부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개입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우려가 있음. -감시초소 및 순찰 도입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빠르게 인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함. -순찰 활동을 직능단체 등 여러 시민사회와 연계하거나 고령층의 공공근로 일자리의 일환으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p>		



연번	8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개선 점		
현황 및 문제점	<p>기후위기를 비롯하여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재난인 시대입니다. 자연 재해와 크고 작은 사고들도 재난에 가까울 만큼 규모가 크고 치명적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대책과 훈련이 절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9월 27일 실시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준비와 홍보, 소통과 음식부족 등으로 불만과 아쉬움이 적지 않았습니다.</p>		
개선 건의	<p>서울시의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다음에는 좀 더 내실 있게 개선되기를 바랍니다.</p>		
세부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자치구에서 수립한 계획서는 자료들뿐이어서 도식적이고 절차적입니다. 자료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각 자치구 단위에서도 사전에 자치구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 훈련이 이루어지고 이런 성과들이 서울시의 재난안전 훈련으로 집약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마다 재난대응 훈련들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서울시의 재난안전 훈련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2. 잠실에 도착하자마자 분배된 도시락은 정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시락이 부족해서 점심을 굶거나 각자 알아서 간식으로 끼니를 해결해야만 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콜라는 남아도는데 물이 부족해서 편의점에서 물을 사 먹어야 했습니다. 음식도 다 튀긴 반찬들이라 남기고 버려지는 도시락이 적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식중독사고를 염려한 것은 알겠지만 김밥 2줄로 대체하면 음식 낭비도 줄이고 쓰레기도 크게 줄어듭니다. 요즘은 쉬지 않는 재료를 쓰는 김밥도 많습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먹고 난 도시락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금세 파리가 끓고 새들이 덤벼듭니다. 분리수거 장소를 잘 구획하고 간단한 안내판이라도 설치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3. 모두 27개 단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규모도 인원도 적지 않습니다. 지상의 소방차와 구급차와 경찰차는 물론이고 헬기와 전투기까지 날았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단으로 참석한 이들은 핸드볼 경기장 안에서 무료하게 기다리거나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2시간이나 되는 그 동안에 각 자치구의 재난방재 사례를 발표하거나 적절한 강의를 배치하면 훨씬 좋겠습니다. 		

	<p>4. 전체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고 상황이 공유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치구의 참여 단위들이 경기장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밖에서는 많은 훈련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자치구의 대피 훈련도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훈련이 소통되지 않고 상황이 공유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재난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참여되면 좋겠습니다.</p>		
<p>기대 효과</p>	<p>예산과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시민들의 재난 방재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과 참여의 폭을 확장합니다. 또 참여한 이들이 교훈을 얻고 이를 각 자치구에서 피드백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자발적인 심화과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p>		
<p>붙임</p>			